

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부자가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기부자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)
	주소	전화번호
기부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		
기부금액	금 원(₩)	
기부방식	[] 일반기부 [] 지정기부	
기부대상 사업 또는 목적의 명칭 ※ 지정기부 선택 시 작성합니다.		
답례품	[]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신청	
	[]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함	
	[] 답례품을 제공받지 않음	

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합니다.

년 월 일

기부자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자치단체 귀하
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주민등록표 초본 2.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3.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기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위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기부자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는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가 직접 작성하여 기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.
*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.
- 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답례품에 관한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별도의 답례품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